



규제사항 업데이트 2021년 4분기

mazars

서론

주요 개정 사항

2021년 7월 발표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연말에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규제사항 업데이트: 2021년 3분기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은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에 대해 2년 연장,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전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등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사항 업데이트에서는 개정된 사회보험요율과 같은 급여 문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업데이트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줄리앙 에르보
파트너,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세법 개정사항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2021년도 개정세법안 국회 승인

개정 세법은 2021년 11월 30일 국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원래 제안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개정세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3분기 규제사항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사전답변 및 질의회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재법인-374, 2021.08.19, 법령해석법인-107, 2021.0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법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법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법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1) 전년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적용, 동 소득공제는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5%p 상향되어 20% (1천만원 초과분 35%)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사 및 급여 개정사항 보험요율 변경 및 최저임금

1. 2022년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변경

- 건강보험 요율이 2021년 6.86%에서 2022년 6.99%로 1.89%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2021년 11.52%에서 2022년 12.27%로 6.51% 인상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2021년 1.6%에서 2022년 1.8%로 12.5% 인상됩니다.
- 건강보험 요율변경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변경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험 요율 변경	현재		변경	
	고용주부담	근로자부담	고용주부담	근로자부담
건강보험	보수월액 X 3.43% X 1.1152	보수월액 X 3.43% X 1.1152	보수월액 X 3.495% X 1.1227	보수월액 X 3.495% X 1.1227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금액 X (0.8%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안직능 보험요율)	월평균보수금액 X 0.8%	월평균보수금액 X (0.9%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안직능 보험요율)	월평균보수금액 X 0.9%

2. 2022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 (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습니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인사 및 급여 개정사항

임신 근로자 제도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3.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 ~ 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 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1.11.19.)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고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https://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사항

외국인근로자 입국정상화

5. 외국인근로자 입국정상화: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예정

-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었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자 수가 기존 연 5만명에서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 A)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합니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국가B)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 (5개국) ¹	그 외 국가 (11개국) ²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021년 11월 5일 기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2021년 11월 5일 기준)

-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되었던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됩니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하며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합니다(미접종자는 1인 1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회계감사 개정사항 외부감사

외부감사인 선임

2022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2022년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30일까지 선임해야 하는 초도 감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 감사의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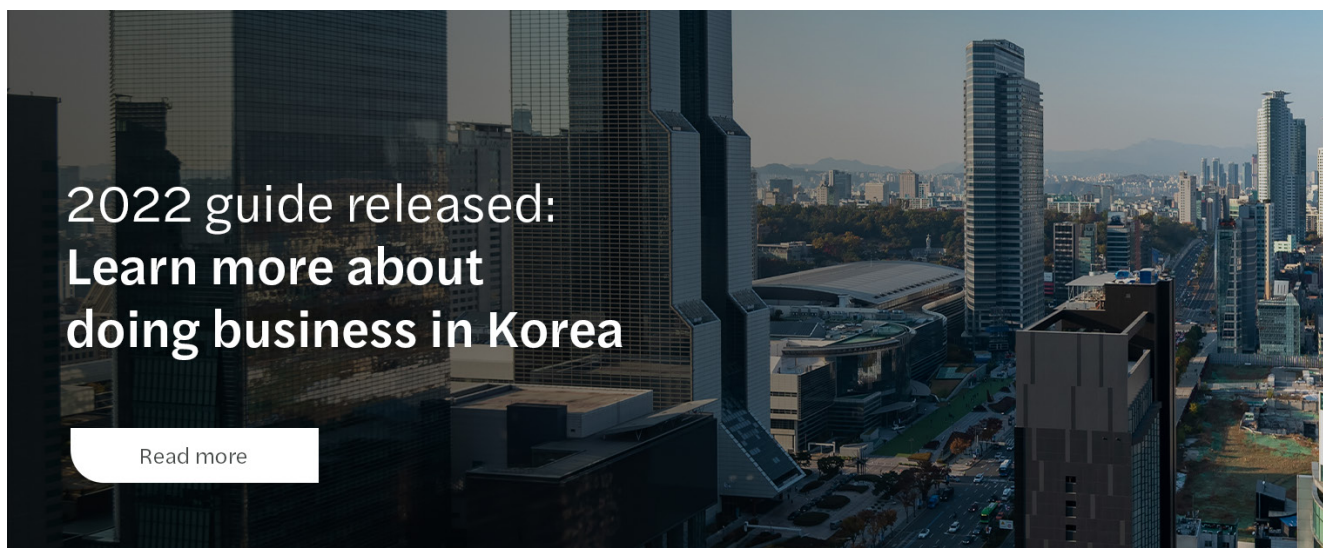
1) 주식회사가 다음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장기업(주식시장, 코스닥, 코넥스) 또는 상장예정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 지난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a)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b)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c) 종업원이 100명 이상
 - d) 사원(정관에 기재된 사원)이 50명 이상

대부분의 대형 기업들은 2019년 2월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감사인을 선임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감사인 선임에 관해서는 2022년 2월 14일까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 위원 및 구성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2분기 규정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한회사가 다음 2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 지난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a)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b)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c)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d) 종업원이 100명 이상
 - e) 사원(정관에 기재된 사원)이 50명 이상



핵심 지표

주요세율 및 4대 보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2018년~2020년 귀속 ¹⁾)
1,200만원 이하	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8.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46.2 %
10억원 초과	49.5%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4.2%
3000억원 초과	27.5%

4대 보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 부담비율
건강보험	월 평균보수 X 3.495% X 1.1227	월 평균보수 X 3.495% X 1.1227
국민연금	월 평균보수 X 4.5%	월 평균보수 X 4.5%
고용보험	월 평균보수 X (0.8% + 사업규모에 따른 추가보험료율 [0.25%~0.85%])	월 평균보수 X 0.8%
산재보험	월 평균급여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0.7%~18.6%)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	월 평균보수의 약 9%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료율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음.

Contacts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더프라임 (업무동) 19층
04315

Tel: (+82) 2 3438 2400
Fax: (+82) 2 546 2368
Email: contact@mazars.kr

Seung-ha Park,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세무
seung-ha.park@mazars.kr

Julien Herveau, 줄리앙 에르보

파트너, 국제 데스크 담당
julien.herveau@mazars.kr

Jung-min Lee, 이정민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jung-min.lee@mazars.kr

Gyu-taek Sim, 심규택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gyu-taek.sim@mazars.kr

www.mazars.kr

마자르는 감사, 회계, 자문, 세금 및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적 통합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자르는 42,000명 이상의 전문가(마자르 통합 파트너십 26,000명, North America Alliance 16,000)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www.mazars.com

© Mazars 2021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Mazarians: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이정민, 심규택, 허영, 양지선, 심민규, 김은유, 신나래, 정한움